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때 협력하는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상호간,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는 물론, 초광역 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권역간 연계·협력도 포함하는 실용적 개념으로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고령화·저성장 시대에는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중앙-지방간 협력사업,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사업(시설)의 융복합화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연계협력방식을 추진함으로써 부족한 인적, 물적 사업역량을 보완하고 한정된 지역발전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통하여 중복투자과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할 뿐 아니라 분산투자 로 인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절감하고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결합생산을 통하여 투입 대비 추가이익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공동 생산함으로써 사업규모와 추진역량을 중대시키고 임계수요(criticalthreshold)를 확보함으로써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실현해야 한다.

사업 추진실태

추진현황

수립한 직후인 2010년부터 기초생활권, 시·군·구 단위 시범공모사업의 형태로 연계협력사업에 대해 1,83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2차 평가를 거친 후, 관계부처가 연계를 승인하고 있다.

연계계획을 수립하면서 총 33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최종 14개 사업을 선정하여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계협력사업은 시·도간 또는 광역권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선·후방 연계효과를 극대화하는 연계협력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광역경제권별 특화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 국가발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지경부 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지원기간은 총 3년 이내인데, 1년 단위로 결정하였으므로, 2010년 30개 사업에 대한 540억원의 지원을 받은 조광역개발권의 연계협력사업은 동석남해안 연결도로사업의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연계협력사업의 지원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광특계정
기초생활권 (시·군)		83억원 (10개)	123억원 (12개, 신규 2개)	지역계정
광역경제권 (시·도)	54,499억원 (3개)	1,000억원 (6개, 신규 16개)	1,150억원 (46개, 신규 150억)	광역계정
초광역개발권 (광역권간)	67,000억원 (1개)	148억원 (1개, 신규 1개)		
계				

2. 연계협력사업의 추진과정의 평가

정부에서 광역적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간 연계협력을 강조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행정구역 단위의 투자가 관행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첫째, 계획수립 마감, 연계협력 사업의 평가, 예산 반영 등을 염두에 두고 짧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다보니 즉흥적으로 급조된(ad hoc basis) 계획이 많아 발굴건수에 비해 사업계획의 충실도와 실현가능성 등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협력에 의한 지역발전은 시간을 정해두고 마감하는 사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계획수립 단계에 임박해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경우, 협의조정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합의형성에 이르지 못 채, 단순한 구상 또는 제안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둘째, 연계협력 사업의 선정과정이 중앙 위주의 하향적 방식

